

본인확인서(단체용) 의무 포함사항
<Entity Tax Residency Self-Certification Form>

계좌보유자 정보 <Identification of Account Holder>		
① 이름 <Name>		
② 설립지 <Jurisdiction of incorporation or organization>		
③ 본점 또는 주사무소 주소 <Current Residence Address>		
④ 거주관할권 <Jurisdiction(s) of residence>		
⑤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⑥ 납세자번호 <TIN(s)>		
○ 납세자번호 미기재 사유 <If no TIN available, enter any reason>	□ (A)	□ (B)
⑦ 단체의 유형 <Account Holder's status>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회사등 <Financial Institution>	<input type="checkbox"/> 능동적 비금융단체 <Active NFE>	<input type="checkbox"/> 수동적 비금융단체 <Passive NFE>
실질적 지배자 정보 <Identification of Controlling Person>		
⑧ 성 <Last name>	⑨ 명 <First name>	
⑩ 주소 <Address>		
⑪ 거주관할권 <Jurisdiction(s) of residence>		
⑫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⑬ 납세자번호 <TIN(s)>		
○ 납세자번호 미기재 사유	□ (A)	□ (B)

<If no TIN available, enter any reason>

⑭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작성방법

1.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주관할권임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서의 경우 한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보유자가 복수인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정보는 정보수집기준연도 12월 31일을 기준(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시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③·⑩번란: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포함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5. ④·⑪번란: 거주관할권은 귀하가 납세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하며, 복수의 거주관할권을 갖는 경우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6. ⑤·⑫번란: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입하여야 하고, 국가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7. ⑥·⑬번란
 - 복수의 거주관할권을 갖는 경우 각 거주관할권의 납세자번호를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 (A)귀하의 거주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B)귀하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위 (A)와 (B) 중 해당하는 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현황은 OECD AEOI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가 스스로 파악하여 기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8. ⑦번란: 귀 단체가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9. 실질적 지배자 정보는 귀 단체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실질적 지배자가 복수인 경우 각 실질적 지배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10. ⑨번란: 중간이름(middle name)이 있는 경우 9번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본인확인서는 이행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위 정보가 모두 기입되어야 유효합니다.
2. 본인확인서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행위 등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실사의무와 보고의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이행 방해 행위는 이행규정 제51조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3. 본인확인서 작성자는 이행규정 제52조제7항에 따라 본인확인서에 기입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거래회사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본인확인서를 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사실을 부당하게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지연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통보하는 행위 등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실사의무와 보고의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이행 방해 행위는 이행규정 제51조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작성자 <Print Name>	(서명) <Signature>	서명일 <Date>
---------------------	---------------------	---------------